# 附議案件

#### 총 12 건

-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조례안
-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光明市議會

# - 차 례 -

١.	의회운영위원회 (3건)
$\bigcirc$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bigcirc$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bigcirc$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조례안19
Π.	자치행정위원회 (5건)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3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5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51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73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9
III.	복지건설위원회 (4건)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1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129

-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 

발의연월일: 2015년 1월 29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이길숙 의원, 이윤정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시 본청의 부시장 및 국·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무관급 공무원의 답변도 필요한 만큼 팀장 또는 6급 이하 주무관 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을 추가하여 신설토록 함. (안 제2조 제5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_
--	---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소	관	의회사무국
이	안	김 익 찬 의 원 010-3722-4500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 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
과 같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설)	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 찬성자서명명부

(안건 :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원 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9年2四六	9/1/12/2	26-65	7/422	대표발의
의 보는 보다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3132	0)723	22 0/126	
चेग्रस्सिश्हें	부위원강	이윤정	0/326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_	13	$\sim$	_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 

발의연월일 : 2015 년 1 월 29 일

발 의 자:김익찬의원(대표발의)

이길숙 의원, 이윤정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광명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내에 총괄 부서를 두고 있으나 부서별 공약실천 이행 등 시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 공약사항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의원의 공약사항을 집행부 차원에서 총괄하기 위한 시의원 공약사항 관리업무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함. (안 제12조 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자료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 14 -	
--------	--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명시청 내에 시의원 공약 사항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의원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별 추진상황 파악 등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이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소	관	의회사무국
이 님	안	김 익 찬 의 원 010-3722-4500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약실천지원) (생략)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12조(공약실천지원)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명시청 내에 시의원 공약사항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의원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별 추진상황 파악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찬성자서명명부

(안건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원 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9/2/2011	1/1122	21-12-2		대표발의
9/2/2003/ 2 21	ショウも	01723	The	
일 기 건 선 위 한 과	부위원장	可是对	이원정	
		,		

_	18	_
	18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1** 

발의년월일 : 2015년 2월 2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대표발의)

이 영 호 의원, 이 병 주 의원,

조 희 선 의원, 오 윤 배 의원

#### 1. 구 분: 제 정

#### 2. 제정이유

-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근거 없이 발행을 하고 있으므로 발행근거 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
-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홍보계획수립(안 제4조)
- 나. 편집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다. 방송 및 발행주기(안 제21조)
- 라. 시민 기자 등 위촉( 안 제24조)
- 마. 시민 등의 참여(안 제28조)

#### 4. 제정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7. 예산수반사항 : 72,550천원
- 8. 참고자료 : 해당없음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의정소식지"란 주요 의정 및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 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을 말한다.
  - 2. "의회 인터넷 홍보매체"란 의회 홈페이지, 의회 블로그, 의회 트위터, 의회 페이스 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 3. "시민 기자 등"이란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 리포터 등을 말한다.
- 제3조(홍보의 원칙)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 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인쇄물, 신문, 방송,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홍보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정소식지

- **제5조(명칭**)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의정소식」이라 한다.
- 제6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연 6회 이상 12회 이 내로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 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 집행부의 발행부수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 제8조(배부) ① 소식지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광명시 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을 병행하고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시민 기고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제작 및 편집) 의장은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 제1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1. 광명시의회 의원 2인 이내(원내교섭단체별 각 1명)
-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명시민 3인 이내
- 3. 광명시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및 홍보담당 직원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광명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 3. 기타 소식지나 광명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는 달은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

- 제19조(종류)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는 광명시의회 인터넷 방송, 광명시의회 홈 페이지, 광명시의회 공식 블로그, 광명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광명시의회 공식 트 위터 등으로 한다.
- 제20조(제작인 등) 영상미디어·온라인 미디어의 제작인 및 발행인은 광명시의회의장으로 한다.
- 제21조(방송 및 발행주기)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의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 하여 송출 및 게시한다.
- 제22조(사업내용) 의정활동 및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광명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 제23조(운영) 의장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다.

#### 제4장 시민기자 등 운영 지원

- 제24조(시민 기자 등 위촉) ① 의장은 의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기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민 기자 등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있는 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시민 기자 등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 기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기자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6조(시민 기자 등 교육 지원) ① 의장은 시민 기자 및 편집위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 3. 우수시민 기자 등의 산업시찰 및 연수 등
  -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위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시민기자 등이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민기자 등이 의정 홍보 관련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시민 등의 참여) ① 의장은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②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통해 의정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 익 찬 (010-3722-4500)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안 제6조~제8조)
  - 위원회 참석 수당(안 제18조)
  - 시민기자 교육경비 및 수당 등(안 제26조~28조)
- 2. 비용 추계결과 : 72,550천원
  - 가. 추계의 전제
    - 의정소식지 연간 6회(회당 6,000부) 발행
    -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7명, 연간 6회)
    - 시민기자단 위촉 운영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 계	72,550		
의정소식지 발행	36,000	6,000,000원 X 6회=36,000천원	
의정소식지 배송 (용역비 및 우편료)	18,180	-용역:75원×6,000부×6회=2,780천원 -우편:430원×6,000부×6회=15,480천원	
편집위원 회의참석 수당	2,070	115,000원 X 3명 X 6회=2,070천원	
편집위원 및 시민기자 원고료	11,700	150,000원 X 13꼭지 X 6회=11,700천원	
시민기자 등 연찬회	4,000	2,000,000원 X 2회=4,000천원	
편집위원회 간담회비	600	100,000원 X 6회=600천원	

※ 단, 소요예산은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 홍보비용 및 인건비 등은 미 반영된 추정자료임.

### 찬성자서명명부

(안건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위 원 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0/4/2003/8/8/	1/12/2	Zohze	21426	대표발의
건성복지회원		ol on i	of or in	
A A 200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9	0 187	7	
ターテトからからり	W 9/81	2 h f hd	Anfor	<b>b</b>
24 mg 31 m	1 .	9 500	45	
,	//		Ü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33

발의연월일: 2015년 2월 3일

발 의 자 : 오 윤 배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조화영, 조희선

김익찬, 김정호 의원

1. 구 분: 제 정

#### 2. 제정이유

○ 광명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인 도로 및 인도 시설물과 교통 시설물 그리고 공원 시설물 등 광명시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까지)
- 시장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및 처리,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4. 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1] 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 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 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오윤배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소	관	회 계 과
이	안	오 윤 배 의원 (010-3897-5661)

# 【별표1】

#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	가. 차량진입 방지 시설(경계석 등) 나.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다. 육교 라. 맨홀 마.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 시설 바. 가로변 휴지통 등 사.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2. 교 통	가. 볼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 시설 나. 교통 관련 표지판 다. 교통 신호기 등 라.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마.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물
3. 공 원	가.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 나. 벤치 다. 음용수대 라. 공중화장실 마. 체육시설물 등
4. 그 밖에 광명시 예산으로 구	<sup>1</sup> 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

## [별지 제1호서식]

#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시고		신고인		훼손	<u>는</u> 자			처리내용		
연번	신고 일자	성명	연락처	증빙자료	성명	연락처	접수자	현지확인 일 자	조치내용	처리자	비고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물	· 훼손자 신고포싱	남금 지급 신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 고 일	년	월 일 사	] 분
	신고기관			
신고사항	리지구시	성명 또는 업소명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지	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을 신청합니다.	
		년 월 (	<u>]</u>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	ਨੌ -			
<ul><li>※ 구비서류</li><li>1.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li></ul>				

## [별지 제3호서식]

#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

	시고		신고	.인			조치결과			· 지급내	<u>a</u>
연번	신고 일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조치 일자	내용	지급 일자	사유 (건수)	금액	계좌번호
<u> </u>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계법령	내 용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발의자 서명부

(안건 :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Ž2 124	3/h	2 gr gy	Site of the second	대표발의
2/2/2018/2019/201	4 91	6/22	2 37	
	(			
2/1	9191	nya	7245	
2/2/	950	えりか	puln	
£2/295/	;14	3/4/28	2/-/2	
4	9	7/262	7/1/2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

발의년월일: 2015년 2월 3일

발 의 자: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조희선 의원 김익찬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동일한 법인이나 동일인이 2개 까지만 관내 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여 한 동일한 법인이나 개인의 위탁과정에서의 독점 현상을 막고 민간위탁의 정책적 다양성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 3. 주요내용

- 평가결과를 7일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안 제6조 3항 변경)
- 동일인이나 동일법인 등에 2개를 초과하는 시설 위탁을 제한(안 제6조 4항 신설)
- 4. 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7일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단, 업무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동일법인이나 동일인에게 2개를 초과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동일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시설에 한하여서는 그 위탁시기가 만료 된 직후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소	관	자치행정과
잉	안	의원 조화영 (010-2055-428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 ①~②(생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	하며, <u>평가결과를 7일 이내에 광명시</u>
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7>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
	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 시장은 동일법인이나 동일인에게 2
	개를 초과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안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조화영	2407	대표발의
"	٠	01-337		,
11	11	NEW	2 yw	(
42/2/25/23	1 5/4	7/4/2	2/4/2	
4	6	7/ 2/2	7/42 Om	
-				

#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 52 -	
--------	--

#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5

발의년월일: 2015년 2월 3일

발 의 자: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조희선 의원,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이윤정 의원

1. 구 분: 제 정

#### 2. 제정 이유

○ 지자체의 단체장이 공무국외여행을 갈 경우 시민들에게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주고, 국외여행시 시장 및 동반인에게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 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

#### 3. 주요 내용

- 시장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안 제4조)
-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안 제5조)
-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여행계획서 공개(안 제9조)
- 여행보고서 제출(안 제10조)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8.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부천시장 국외여행 공개사례
  - 공무국외여행규정
  -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광명시장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 ② 시장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u>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u>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여행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3. 해외여행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 4. 여행계획 결재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여행의 필요성
- 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 3. 시장의 여행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한 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공무원 2인 이내, 시의원 2인 이내, 대학교수 또는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2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공개)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여행의 목적·동기·기간·경비·여행자 동행 인원 및 여행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여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시장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소	관	자치행정과
이 남	안	조 화 영 의원 (010-2055-4281)

[별표1]

# 시장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 여행계획서 작성

(주관부서)

- 관계 국 및 기관 협의 (시장국외여행 담당부서 장 협의 필수)

### 공무여행심사 의뢰

(주관부서→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시장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여행계획서, 기타 증빙 서류 등
- 출국 30일 전까지

## 공무국외여행 허가

허가통보

(심사위원회→시장)

시장공무국외여행 시행

시장공무국외여행 심사

#### 보고서 제출

- 귀국 후 30일 이내
- 시 홈페이지 등록

## [별표2]

#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내용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시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했고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 획 수립
여행목적지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의 적합성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시장의 여	- 여행동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행 동행자· 동행 인원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수행인원)이 2명 이 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의 적합성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 및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시기의 적정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한 산출 지급 여부
적정성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 [별지 제1호서식]

# 시장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1. 여행개요

여행목	적						
여행동 <sup>7</sup> 및 배경							
여행기계	간		^	,	. ( 일건	<u>}</u> )	
여 행 🗦	국						
여행경 <sup>1</sup> 부담기	비 관						
		동형	· 여행자(	명) 및 경비(	천원) 내	역	
성	Ę	형	생년월일	소속	지이(지그)	여행경비	비고
한 글	•	경 문	/ 70 년 분 분	27	직위(직급)	7 3/8 41	H1-12-

## 2. 여행 세부계획

#### 가. 여행목적

- (1) 여행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2) 여행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 나. 여행일정(시간대별 작성)

월 일 (요일)	도시명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방 문 기관명	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 다. 여행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 원)

, ,	성 명	~l]	쉬기기	Ā	1)	재 '	刊	יין דער פו	ا ا
소속	성 명 (직 급)	계	항공료	소 계	일 비	숙박비	누박비 식 비	준비금	기타
					\$×일	\$×일	\$×일		
					= \$	= \$	\$×일 = \$		

# 라. 자료수집계획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기간	자료수집내용

마.	여형	y효과
마.	व्य ह	병효과

 $\bigcirc$ 

 $\bigcirc$ 

[별지 제2호서식]

# ○ ○ ○ 항공사

# G. T. R

항공운임증명서

일	자 _		
발행변	<u></u> 보호		

여 행 7	아성 명	
卢	급	
구	간	
운	임	

상기 요금은 국제항공요금표 및 규정에 의거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정부 및 해당국의 요금 및 환율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해외여행부 일부인(VALIDTION)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G.T.R

발 행 처 :	일 부 인	<u>·]</u>
---------	-------	-----------

[별지 제3호서식]

# 해외여행자 서약서

- 1.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품행을 바르게 한다.
-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출장목적을 파급, 전파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
- 3. 국가보안업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출장 시 반출한 모든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 5. 여행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
-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국외여행담당부 서장에게 통보한다.
- 7.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광명시 (직) 광명시장 (성명) (인)

#### [별지 제4호서식]

### 심 사 의 결 서

	심 사 항 목	적 합	부 적 합	비고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여행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			
	협의 등			

※ 적합·부적합 난에 "○"으로 표기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성 명 날인

### [별지 제5호서식]

귀국보고서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 박 일)					
여 행 국		도 시 명					
여행경비							
보고서작성자							
	여행동행자 인적	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고				
SP 13							

#### ※ 첨부서류

- 1. 귀국보고서
-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 3. 사진자료집
-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 참고 1

# 부천시장 국외여행 공개사례

# □ 2011년 시장 공무국외여행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여행 목적	여행지	여행경비 (원)	<u>여행동행</u> 인 원	<u>여행동행자</u> 경비 총액	주관부서
1						이 란은 부천시에 없음	이 란은 부천시에 없음	
2								

#### 참고 2

##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 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영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 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③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 또는 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여행일정·수행원 또는 동행인의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여행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 중 외청장(外廳長)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장관이 허가하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여행은 대통령이 허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여행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을 수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여행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 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하고, 심사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5조 삭제 <1991 · 6 · 19>

- 제6조(정세 설명) ①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특히 관련되는 외교 상의 문제를 포함한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출국 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행목적 및 방문국을 고려하여 설명 대상자 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제1항의 정세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설명의 실시 결과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 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 야 한다.
  -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자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은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여행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13>부터 <418>까지 생략

#### 참고 3

##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 ② 공무상 국외여행을 추진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서식)
  - 2. 그 밖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증빙자료
-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 영계획
  - 3. 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 4. 시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는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 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15, 2013. 6. 5, 2013. 8. 1, 2014. 8. 14〉
  -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심사 기준) 국외 여행에 대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여행계획의 변경)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국외여행 기간이나 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여행시기, 3일 이내의 여행기간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외여행업무 관련 국장이 허가한다.
  - ③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양교육 내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외 여행자 수칙을 포함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출장복명서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 외여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8호,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 의 자 서 명 부

# (안건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조화영	Zulog.	대표발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水ツ州	pym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 767	0 12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7/0/2/	2/0/2/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이윤정	이윤정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39

발의년월일: 2015년 2월 4일

발 의 자: 조희선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이영호, 이윤정, 이길숙 의원 김익찬, 오윤배, 김정호, 조화영 의원

1. 구 분: 폐 지

#### 2. 폐지이유

○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간위탁특위활동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를 이용 하여 시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해당없음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희선 의원 대표발의 (외 8 인)
소	관	기획예산과
이 ㅂ	안	의원 조희선 (010-3000-8089)

## 발 의 자 서 명 부

## (안건: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폐지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조희선	Bul W	대표발의
y	<i>(</i> /	0 37	23	공동발의
137/2/26/26	1 3/4	o mie	9	공동발의
				공동발의
र्या गर्म संदर्ध	부위원장	可进程	이글것	공동발의
67	3/2	0 7hh	194	공동발의
1/2/ NU; [1/3]	SIA	21.626	Cr-ikaha	. 공동발의
FUNKAGE	22	2 21 94	A.	11
5	4	1/1/3		(1
60	(i	7 te 1-06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발의년월일: 2015년 2월 3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조희선, 이윤정, 이병주 오윤배, 조화영 의원

1. 구 분 : 전부 개정

#### 2. 개정이유

○ 시장이 이사장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곳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실도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을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정관은 <u>시의회의 동의를</u>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 제4조제2항)
-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과 육성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 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안 제6조제3항)
-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안 제9조제1항)
-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안 제9조제2항)
-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9조제3항)
- 4. 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7.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교육기본법」제28조, 「민법」제32조 ~ 제43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육기본법</u>」제28조에 따른 광명시의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u>민법」제32조 및</u>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공익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u>민법」제43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u>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数), 임기 및 그 임면(任免) 등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12. 사업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② 정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재단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본재산의 50%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
- 4.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기구)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3. 학문. 과학기술 연구·조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 ③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시 출연금
- 2. 민간 기탁금
- 3. 기본재산 운용수익금
- 4.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출연금) 시장은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경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겪임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한다.

- 1. 정관의 제정·변경
-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① 재단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임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민법」</u>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수탁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소	관	교육청소년과
입	안	김 익 찬 의원 (010-3722-4500)

## 참고 1

## 관계법령발췌서

관계 법 령	내 용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전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제도 한 경비의 하거나 연 지급 방법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은 주무관 ·재지에서 정관으로 표자가 그 나다. 이사

-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 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 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참고 3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 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 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 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關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수 있다.
  -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 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삭제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 의 자 서 명 부

(안건 :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2/2/45/XE	/ 위 원	21-42	71-452	대표발의
2-2/8/265/5	1 W <sup>A</sup> B	To w/w	July	
12 m 40	위 원			
是对对对针错数	/ 위 원	0/ 1/2	0/27	
2年期期35年	위 원	0 37	> 3	
9 2 2 4 4 1/2	212	2º &M	WAR!	
7/h/20me/Pre	1 11	nafor	Zafort.	
			1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 

발의연월일: 2015년 2월 2일

발 의 자:이길숙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이영호, 이병주 김정호, 조화영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 보 훈명예수당이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적정수준을 유지 해드리기 위함.
- 대부분의 타지자체(경기도 31개시군)는 4~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3만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3. 주요내용

- 1인당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다만, 6.25참전 유 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안 제8조제1호)
- 4. 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7. 예산수반사항

#### ○ 보훈명예수당

가. 2014년도 총 지급액 : 금1,000,670,000원

	적	ያ	결의금액
2014. 1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640,000
2014. 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580,000
2014. 3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4,490,000
2014. 4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4,100,000
2014. 5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560,000
2014. 6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050,000
2014. 7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2,780,000
2014. 8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300,000
2014. 9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220,000
2014.10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3,350,000
2014.11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2,970,000
2014.1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82,630,000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자(2015. 1월 기준) : 2,281명

(※ 6.25참전유공자 수 : 695명 : 월 50,000원 지급)

다. 보훈명예수당 20,000원 인상 시

1) 추가 예산소요액 : 금380,640,000원

2) 산 출 내 역 : (20,000원 × 1,586명) × 12월

3) 추가 인원수 : 1,586명(월 30,000원 지급)

[2,281명(보훈회원 총 인원)- 695명(6.25참전유공자 수)]

#### 라. 현행과 비교

구 분	현행		개정		월 추가소요액
총인원	2,281명		2,281명		
6.25참전용사	695명 × 5만원	34,750천원	695명 × 5만원	34,750천원	
보훈명예수당	1,586명 × 3만원	47,580천원	1,586명 × 5만원	79,300천원	31,720천원
비교		82,330천원		114,050천원	31,720천원

※ 연간 추가소요액: 31,720천원 × 12월 =380,640천

#### 8. 참고자료

○ 경기도 내

가. 3만원 : 7곳

나. 4만원 : 6곳

다. 5만원 : 17곳

라. 7만원 : 1곳

#### ○ 기타 지자체

가. 8만원 : 충북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나. 10만원 : 충남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세종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월 2만원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길숙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소	관	복지정책과
이 ㅂ	안	이길숙 의원 010-5315-5316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1인당 월 <u>3만원</u> 의 보훈명예수당(이	1 <u>5만원</u>
하 "수당"이라 한다) 다만, 6.25참전	
유공자에게는 <u>월 2만원</u> 을 추가 지급한	<u>예산의 범위 내에서</u>
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발의자서명부

(안건: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위원회	직 위	성명	서명	비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이길숙	A	대표발의
11	11	7/0/26	2/6/26	居是些一
4	7	o oto in	0/10/2	. 11
2/2/1427	′,	0 200	2003	"
其2	4	1/2/32	M	11
对刻	11	722/08	napa	′/
			,	
-				



##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7** 

발의연월일 : 2015년 2월 2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 원(대표발의)

이윤정, 이병주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광명문화원이 광명문화원사에 사업에만 충실하여도 벅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광명문화원의 법인명으로 관내에 4곳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광명문화원은 문화원사의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기 위함.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1조에 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으나 광명문화원 및 광명 문화원법인에서 위탁을 받 고 있는 곳의 임원(이사) 및 직원들의 일부는 정치에 직간접 관여하고 있 는 점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일부 개선하고 자 함.

#### 3. 주요내용

○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 4. 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8. 참고자료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의 "정의"
    - :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명문화원에서 수탁 받은 사업 등은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발	의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소	관	문화관광과
임	안	김 익 찬 의원 010-3722-45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관리) ①~③ (생략)	제6조(위탁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 찬성자서명명부

(안건 :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42/1/2: [24]	3/1/11	2/0/26	Kinika	/ 대표발의
7   10				
म्यास भी स स	1982	이건정	0/ 978	
1/21 21/25 SLW	9 91	0 43	233	
			,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8

발의연월일: 2015년 2월 2일

발 의 자 : 이 영 호 의 원(대표발의)

오윤배, 이길숙 의원 조희선, 김익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중 도로에 대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도로에 대한 규정부분(안【별표 1】)
- 4. 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8. 참고자료: 건축법

광명시 조례 제 호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 영 호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소	관	도시정책과
입	안	이 영 호 의원 010-3751-6542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개발행위 허가기준(제23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별표1]개발행위 허가기준(제23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점토분야 허가 기준		
가.건축 모	(1)(생략)  (2)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로서 예정도로는 제외한다.(가)~(마)(생략)	(1)(현행과 같음) (2) 가.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 (가) ~ (마)(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 관계 법 령 발 췌 서

관계법령	내 용
	제2조(정의) 11."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참나에 체단하는 도로나 그 에저도로를 마하다
건축법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찬성자서명명부

(안건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3724392	g gr	of Min	50	대표발의
第21九提引到到	3/82	21.425	2/1/2	9
7-2 3/205 9/21	9/30	Ryw	myn	Puri
32 MANN	212	Solon	Ath	
//	[†	0 7h2	the	
,				
		V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8

발의연월일 : 2015년 1월 26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 원(대표발의)

이길숙 의원, 조희선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 2.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시 가판대소유자들의 차량소유현황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1억원 대의 BMW X5 차량을 소유하거나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 고 있는 가판대 소유자들이 다수 있어 동산도 재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점용허가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 차를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에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만 해당되었음.

### 4. 개정조례안 : 붙 임

-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 6.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융재산"을 "금융재산 및 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소	관	도로과
이	안	김 익 찬 의원 (010-3722-4500)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허가) ①~② (생략)	제4조(점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허가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	3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	
람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	
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	
른 임차보증금 및「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발 의 자 서 명 부

(안건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익 찬	7/9/2.	대표발의
5-121-4;  1121			1	
//	うらか	~ 74'3	A	
7-3/5/2	1 9 50	72 M	7 mg	2